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 (제 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주야간 보호서비스 제공기관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고, 가정위탁이 종료되었을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회수하도록 하는 한편,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

제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라목까지”를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라목 중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4호의 경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7조의3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사람이 가정위탁 보호를 종료한 경우

별표 2 제3호가목의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의 설치기준
란 중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설치하는 경로당(「노
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을 말한다)”을 “경로당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을 말한다) 및 노인의
료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말
한다)”로 한다.

별표 2의4 제2호라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영 제8조제1항제4호”를 “영
제8조제1항제5호”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생략)

② ~ ④ (생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연 락 처	(044) 202 - 3307